

# 檢 討 報 告 書

- 瑞山市諸證明等手数料徴收條例中改正條例案

總 務 委 員 會

專門委員 李 榮 振

瑞山市諸證明等手数料徴收條例中改正條例案  
檢 討 報 告 書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7. 9. 12

3. 提案理由

-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시행에 따라
- 동 업무의 역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함.

5. 檢討意見

-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는 종전에는 법원,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

- '97.9.1부터 서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읍.면.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으로써,
- 동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그러나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증명, 인.허가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등 19개분야 102개 업무로써 여러 실과(부서)의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
- 본 조례에 대한 주무 부서가 없이 해당실.과 별로 수수료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요구할 경우 농수산, 도시계획, 건설관련 업무 등에 대하여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사료됨.